국토교통부	보 도 자 료					
	배포일시 2018. 3. 1(목) / 총 2매(본문2)					
담당 부서 ^{주택정책과}	담 당 자 • 과장 김영국, 사무관 박진홍, 주무관 박준호 • ☎ (044) 201-3324, 3334					
보도일시	2018년 3월 2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3.1(목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			

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3월 정기 고시

- 직전 고시['17.9월] 대비 2.65% 상승 -

- □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**분양가격 산정**에 활용되는 **기본형** 건축비가 '18.3.1일부터 2.65% 상승된다.
 - ※ 최근 기본형건축비 증감률
 - ('13.3월) 1.91% → ('13.9월) 2.1% → ('14.3월) 0.46% → ('14.9월) 1.72% → ('15.3월) 0.84% → ('15.9월) 0.73% → ('16.3월) 2.14% → ('16.9월) 1.67% → ('17.3월) 2.39% → ('17.9월) 2.14% → ('18.3월) 2.65% 상승
 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지난 '17.9월 고시 이후 **노무비**,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기본형건축비를 개정·고시한다고 밝혔다.
- □ 국토교통부는 재료비,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 건축비를 6개월(매년 3.1, 9.15)마다 정기 조정하고 있다.

≪ 조정 근거 ≫

*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와 이를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을 기준으로 고시하여야 함 (「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」제7조제3항)

이번	기본형건축비	상승요인은	철근,	유류, 등	동관 등	투입가중치기	ㅏ 높은
주요	원자재와 시청	중노임 등 5	c무비·	상승에	따른 기	것이며,	

- ① 노무비: 3.148% 상승 ⇒ 기본형건축비 1.187%p 상승
 - 형틀목공 5.58%, 내선전공 4.09%, 배관공 3.67%, 보통인부 2.78%
- ② 재료비: 1.887% 상승 ⇒ 기본형건축비 0.668%p 상승
 - 동관 13.78%, 철근 10.19% , 유류 7.44%
- 분양가 상한액은 전체 분양가 중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, 약 1.06~1.59% 정도 오를 것으로 분석된다.
 - ※ 지난 '17.9월 고시 이후 기본형건축비 변화
 (전용면적 85㎡, 공급면적 112㎡, 세대당 지하층 바닥면적 39.5㎡의 경우)
 - 공급면적(3.3 m²)당 건축비 : 16.2만원 상승(610.7만원 → 626.9만원)
- □ 이번 개정된 고시는 '18.3.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되며,
 -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,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되므로,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의 인상 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박진홍 사무관(☎ 044-201-3324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